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4,248,117	6,727,444
일반회계	214,864,944	6,445,948
특별회계	9,383,173	281,495
기타특별회계	9,383,173	281,49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6,568	15,49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45,682	10,370
주차장특별회계	7,812,642	234,37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86,595	20,598
기반시설 특별회계	14,178	425
재정비축진 특별회계	7,508	22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8,1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